

제7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2. 26.(월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6 의결사항

가. 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

- (2011-75-431)

-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친 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사항 : 규개위의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·보완

- ‘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·지연 금지행위’와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“판매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”와 “기타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”를 추가
- 부칙에 명시된 '12년 런던 올림픽의 적용에 있어, 가시청 가구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과 중계권 거래 협상요청기한을 당초 고시한 날로부터 “1개월”에서 “2개월”로 연장

○ 주요 내용

- ① (방송수단 확보)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(자가 또는 임대)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에 관하여 규정(제2조)
- ② (실시간 방송) 중계방송권자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하고, 예외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(제3조)
 - 재난방송,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인 송출이 불가능한 경우,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, 기타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감소하여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
- ③ (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·지연 금지) 중계방송권 판매·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,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예외적인 면책사유도 규정(제4조)
 - 구매자측 제시가격·조건 등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구매자의 시설·인력 문제에 따른 방송 송출 불가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인정
- ④ (자료화면 제공)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 및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제시(제5조)
 - 올림픽·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,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1일 2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

-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(5초이상 자막)를 이행하지 않거나 뉴스보도·해설 등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

○ 향후 일정

- 공포·시행 : '12. 1월초

나.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 - (2011-75-432)

-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방통위가 매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(IPv6의 본격 확산) IPv6 기반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IPv6 제공 ISP수를 '11년 현재 57개에서 '14년 90개 이상으로 확대

- IPv6 적용 및 인식제고를 위해 Korea IPv6 Day 연례적 개최 및 IPv6 종합 정보제공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속적 기술지원

- ② (신규 도메인 생성 지원) 국내기업이 국제인터넷기구(ICANN)로부터 기업명 gTLD(예: .삼성, .현대) 등 신규 gTLD 확보시 기술·행정적 지원

※ gTLD(generic Top Level Domain)란 국가를 의미하는 .kr, .us 등의 국가도메인(ccTLD)이외 .com, .net, .info 등 일반문자열의 도메인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23개 운영

- ③ (한글 전자우편 서비스 단계적 추진) 국민 모두가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한글 전자우편(예: 홍길동@방통위.한국) 도입 추진

- 국내 및 국제 기술 표준 등 기반을 조성('13년)하고, '14년 국내 포털을 중심으로 시험 서비스 이후 일반기업으로 단계적 확대

- ④ (HTML5 중심의 웹 환경 구현) 차세대 웹표준(HTML5)의 확산으로 OS, 웹브라우저에 독립적인 표준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 구현

- 웹표준 진단 테스트베드 구축 등 HTML5 확산 촉진계획 수립 및 HTML5 활성화 전략 자문위원회 운영

※ HTML5(Hyper Text Markup Language version5) : 멀티미디어 재생, 파일처리 등을 다른 프로그램 도움없이 간단히 동작하게 하는 차세대 웹 표준 기술

- ⑤ (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재난대비 체계정비) 호우, 정전, 해킹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보호 및 운영 연속성 확보

- '14년까지 실시간 서비스 복구 및 3중 백업 시스템 구축, 중앙 감사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접근 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

※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: kr도메인, 한국도메인 및 IP주소 등 인터넷주소와 제반 정보
·설비·기술 등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센터로 KISA 서초센터에 위치

- ⑥ (인터넷 거버넌스 역량강화)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그룹 발족

다.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에 관한 건 - 춘천 MBC
- (2011-75-433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구축 관련 춘천문화방송(주)에 부과한 재허가조건('09.11.26) 및 시정명령('11.9.28) 변경 건에 대해 원안대로 '홍천' 등 12개 보조국을 기존의 재허가 조건 및 시정명령 이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. 다만, '기린' 보조국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함

< 재허가조건 변경 내용 >

- ◆ '11. 12월말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도계', '사북', '인제', '평창', '정선' 등 5개 및 '12. 12월말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'속초', '화악산' 등 2개의 방송보조국 구축 계획을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한다.

< 시정명령 변경 내용 >

- ◆ '11. 12월말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한 '홍천', '영월', '문막', '고성', '대관령', '기린' 등 6개 방송보조국 중 '홍천', '영월', '문막', '고성', '대관령' 등 5개 방송보조국을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시정명령 내용 중 '기린' 보조국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함

라.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건 - (2011-75-434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시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SO와 PP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2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관련

- (지급 비율) SO별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25~28%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대
- (지급 대상) 기존과 동일(유료채널과 VOD 모두 포함)
- (지급 방식) VOD 확대 등에 따른 기본채널 지급분 감소를 고려, 기본채널 지급분을 '12년은 전년대비 5% 이상, '13년은 전년대비 2.5% 이상 확대(단, 유료채널·유료VOD를 제외한 '11년도 PP지급분이 25%를 초과하는 SO는 제외하고, '14년 이후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)

② SO-PP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

- (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) 업계 자율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의 운용 실적과 계획을 SO 재허가에 반영
- (가이드라인 개정)
 - 채널편성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는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이 완료(100%)된 후 신청 → 80% 이상 계약이 완료된 이후 신청
 - 유료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개별 PP의 시장진입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 신설

마. 「전자파인체보호기준」(고시)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75-435)

○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1년 제51차 위원회(9. 19) 보고 후 제조업체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전자파인체보호기준」(고시) 등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「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」(고시) 개정내용

-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을 ‘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’로 확대

※ 확대 대상 기기 : 노트북, 태블릿PC, 무선전화기, 무전기 등

② 「전자파인체보호기준」(고시) 개정내용

- 현행 머리 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기준을 전신, 머리·몸통, 사지로 세분화하여 규정

※ 국제기준 중 엄격한 기준을 국내기준으로 채택(미국 기준과 동일)

③ 시행시기

- 제품 생산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'13. 1월 시행

사. 470~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계획(안) 및 공고(안)에 관한 건 - (2011-75-436)

○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470 ~ 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시 발생하는 시설자의 손실 보상계획(안) 및 재배치 공고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추진개요

- 아날로그 종료 후 임시채널을 사용하는 방송국을 최종 확정채널로 옮기기 위해 채널재배치를 시행하고,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

※ 방통위는 주파수 재배치시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(전파법 제7조)

② 손실보상 대상

- (DTV 방송국) 470MHz~806MHz 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1,243개 DTV 방송국 중 채널변경이 필요한 885개 방송(보조)국

- (기타 무선국) 700MHz 대역내 운용중인 기타 무선국으로 이동방송중계용, 라디오 방송중계용 및 도서통신용 7개 무선국

※ 보상대상 무선국 수는 시설자의 구축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③ 손실보상금 산정기준(전파법 시행령 별표1)

- (DTV 대역) DTV 채널재배치는 일부 부품(필터 및 안테나 케이블 등) 교체로 채널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존 시설의 부품교체비용으로 산정

- (기타 무선국) 이동방송중계 및 라디오방송중계, 도서통신용 무선국은 부품 교체로는 주파수 변경이 불가능하여 기존시설 철거비용으로 산정

④ 예산 현황

- DTV대역·700MHz대역 손실보상금 및 사업운영비로 약 191억원 소요

○ 향후 일정

- 주파수 재배치 1차 공고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 접수('12.1월~)
- 1차 공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주파수 재배치 2차 공고 실시('12.하반기)

7] 보고사항

가.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활용 기본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-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방안,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 TV 유휴대역 활용 기본계획(안)을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TV 유휴대역 활용 기술검증 및 기술기준 제정

- TV 유휴대역 서비스 기기가 TV 방송에 전파간섭을 주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을 통해 기술기준 제정('12년)

※ 방송사를 포함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기술기준 검증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

② TV 유희대역 이용 관련 제도 정비

- TV 유희대역 주파수 이용 시 면허/비면허 허용 정책방향 결정,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용도 추가('12년)

※ 우선적으로 DTV대역(채널 14~51번: 470~698MHz)을 고려하고, DMB 및 DTV 예비대역(채널 2~13번: 54MHz~ 216MHz)은 향후 활용방안 결정과 연계하여 추진

③ 전파환경 DB 구축

- TV 방송대역 전파환경 DB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방안, 구축비용 등 타당성 분석 실시('12년)
 - 기 구축된 전파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「TV 유희대역 가용채널 DB」 구축('13년) 및 시스템 고도화('14년~'15년)
-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초기는 정부가 DB를 운영하고, 서비스 안정화 시 DB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('15년)

④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시범서비스 실시

- 매년 설문조사,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, DB접속 방식의 시범서비스 실시('13년)
- DB접속 방식의 TV 유희대역 상용 서비스를 실시('14년)하고, 스펙트럼 센싱 방식 실험서비스 실시('15년)

⑤ TV 유희대역 산업 활성화 지원

- TV 유희대역 활용을 위한 주파수 공유 핵심기술 개발, 관련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, 시제품 테스트 지원센터 설치('13년)

나.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도서지역 통신에 대한 손실보전과 제공사업자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- ① 보편적역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도서통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되,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의 경영효율화 도모를 위해 손실의 90%를 보전
 - 고시 제7조, 제8조에 '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'에 관한 내용을 반영

② 도서통신에 대한 손실보전이 도서지역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
제공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함

- “부칙” 제3조에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는 ‘도서통신서비스 보편적역무 손실
보전금 집행결과 및 이행계획서’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

○ 향후일정

- 행정예고, 규제심사 등 : ’11. 12. ~ ’12. 1.

- 위원회 의결, 관보게재 및 시행 : ’12. 1.

다. 「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
위한 「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을 석재범
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① (목적)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
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
② (기본원칙)

- ① **이용자의 권리** :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
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
받을 권리가 있음
- ② **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** :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, 범위,
조건,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, (별도의 조치를 하는 경우) 이용자에게 고지
- ③ **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의 차단 금지**
- ④ **합법적인 콘텐츠, 애플리케이션,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**
- ⑤ **합리적인 트래픽 관리** :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,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, 관련 법령상
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(유무선 기술특성 고려)

③ (관리형 서비스) 최선형 인터넷(best effort Internet)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
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가능

-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 인터넷(best effort Internet)의 품질과 시장에
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

※ 관리형 서비스 : 일반적인 인터넷 전송방식과 달리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

④ (상호 협력)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은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한
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하고, 필요 시 협의체를 구성

⑤ (정책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)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및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

※ 미국의 경우 후속논의를 위해 ‘오픈인터넷자문위원회(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)’ 구성 예정

○ 향후 추진계획

- '12. 1월 1일 「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시행
- '12. 2월~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 구성·운영
 - 이해관계자·전문가·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
- '12. 2~12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
 -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등 세부기준 마련
 -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등

㉠ 기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1. 5(목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50)